

# 의안검토보고

의안 번호	제145호		
건 명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서초구청장	제안(출)년월일	2000. 5. 17.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김재근		

## 1. 검토내용

### 가. 제안이유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 구세감면조례를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며, 지방세법령 및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등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1)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안 제2조)
  -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구성한 단체 (①항)와 형제·자매 (②항)를 포함.
- (2)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안 제3조의2)
  - 장애인소유 자동차의 등록명의 범위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포함
- (3) 주차장에 대한 감면 삭제(안 제10조 및 제11조)
  - 도심의 주차난 해소목적으로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사업소세(재산할)를 5년간 면제하고 있으나,
  -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으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세제감면은 불필요하므로 이를 과세전환하고자 함.
- (4) 기타 조문정리등 자구수정

##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 관련규정 및 감면현황 : 별첨
- (2)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 (3) 합 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 (4)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서초구 공고 제131호

## 2. 검토결과

가. 지방세 감면조례를 재검토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주차장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는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나. 주요내용은

- (1)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에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로 확대함. (안 제2조제1항)
  - 자동차면허세를 면제하는 대상을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에서 “국가 유공자의 직계존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국가유공자의 형제, 자매”로 확대함. (안 제2조제2항)
  -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이나 세대분기하는 경우에는 면허세를 주장함. (안 제2조제2항 단서)
- (2)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 장애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장애인의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등록일자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분가경우에는 면허세를 주장함. (안 제3조의2제1항)

<p>(3) 지정문화재에 대한 조례(안 제9조제1호)</p> <p>(4) 주차장업을 수익사업이며, 불필요하여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재산,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재산세) 감면조항 삭제(안 제10조)</p> <p>(5)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조항 삭제(안 제11조)</p> <p>(6) 아파트형에 대한 감면율 법령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99. 2. 8 개정되어 관련조문 일부(안 제18조)</p> <p>(7) 지역 신용보증재단법이 1999. 9. 7 제정되어 관련조문개정(안 제20조)</p> <p>(8)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감면근거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가 '99. 5. 24 개정되고, 조세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세특례법에는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이 '99. 5. 24 신설되어 관련조문개정(안 제25조의2)</p>	

####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 주요개정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 주차장 사업에 대한 조례를 삭제함으로서 차량의 도심진입으로 인한 교통난의 가중을 방지하고, 수익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세제감면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초구 공고 제131호로 2000. 4. 10 ~ 2000. 4. 29까지 입법예고된바 있음.
-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일부과세등의 조례를 개정시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자치부 세제 13400-210(2000. 2. 25)호는 지방세 감면조례개정준칙통보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계법령개정에 따른 조례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3. 참고사항

####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임대주택법 제12조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 제28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제5항, 제121조의5 제3항

# 〈 관계법령 〉

## [ 지방세법 ]

**第7條 (公 益 等 事 由 に 因 す る 課 稅 免 除 및 不 均 一 課 稅)** ① 地方自治團體는公益上其他의  
事由로 인하여課稅를不適當하다고認定할 때에는課稅하지아니할 수 있다.

② 地方自治團體는公益上其他의事由로 인하여必要한 때에는不均一課稅를 할 수 있다.

**第8條 (受 益 等 事 由 に 因 す る 不 均 一 課 稅 及 一部 課 稅)** 地方自治團體는 그의一部에對하여  
특히利益이 있다고認定되는事件에對하여서는不均一課稅를하거나 또는 그의一部에對  
하여서만課稅할 수 있다.

**第9條 (課 稅 免 除 等 을 爲 す 條 例)** 第7條 및 第8條의規定에依하여地方自治團體가課稅  
免除·不均一課稅 또는一部課稅를하고자 할 때에는行政自治部長官의許可를 얻어當該  
地方自治團體의條例로制定하여야 한다. (改正 78·12·6, 98·12·31)

## [ 임대주택법 ]

**第12條 (賃貸住宅의 賃却制限)** 賃貸住宅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하 “賃貸義  
務期間”이라 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賃却할 수 없다. 다만, 賃貸事業  
者간의 賃買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制定 1999·9·7 法律第6022號  
改正 1999·12·31 法律第6073號(金融機關의不實資產등의효율적처리및韓國資產  
管理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

###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地域別로 信用保證財團을 設立하여 擔保力이 부족한 地域  
내 小企業·小商人등의 債務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資金融通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地域經濟活性화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 [ 공업배지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第28條의2 (아파트型工場의 設立등) ①第13條・第13條의2・第13條의3・第13條의4・第13條의5・第14條・第14條의2・第14條의3・第14條의4 및 第18條의 規定은 아파트型工場의 設立承認, 認・許可등의 擬制, 設立등의 승인에 대한 特例, 처리 기준의 告示등, 設立등의 承認取消, 建築許可, 사용승인, 製造施設設置承認, 製造施設設置承認의 取消 및 協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②아파트型工場을 設立한 者가 建築法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管理機關에게 아파트型工場設立完了申告를 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중 產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市長・郡守・區廳長 또는 管理機關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아파트型工場設立完了申告를 받은 때에는 이를 아파트型工場臺帳에 登錄하여야 한다.

④管理機關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아파트型工場의 登錄을 한 때에는 이를 市長・郡守 또는 区廳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9·2·8)

第28條의5 (아파트型工場에의 入住) ①아파트型工場에 入住할 수 있는 施設은 다음 各號의 施設로 한다.

1. 製造業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施設
2. 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벤처企業을 영위하기 위한 施設
3. 기타 入住業體의 生產活動을 지원하기 위한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

②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아파트型工場에 入住할 수 있는 施設의 범위 및 규모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9·2·8)

## [ 외국인투자촉진법 ]

第9條 (外國人投資에 대한 租稅減免) 外國人投資에 대하여는 租稅特例制限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法人稅・所得稅・取得稅・登錄稅・財產稅 및 綜合土地稅등의 租稅를 減免할 수 있다.

(全文改正 99·5·24)

## [ 조세특례제한법 ]

### 第 5 章 外國人投資등에 대한 租稅特例

#### 第121條의2 (外國人投資에 대한 法人稅등의 減免)

④外國人投資企業이 申告한  
한 取得稅·登録稅·財產稅  
額을 減免하거나 일정금액을  
稅法 第 9 條의 規定에 의한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第 1 號 및 第 2 號의 規定에

대한 法人稅등의 減免)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財產에 대  
한 綜合土地稅에 대하여는 다음 각號와 같이 그 稅  
額을 減免하거나 일정금액을  
課稅標準에서 공제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가 地方  
稅法 第 9 條의 規定에 의한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減免比率 또는 控除比率을 높인 때에는  
第 1 號 및 第 2 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 取得稅·登録稅 및 財產稅는 事業開始日부터 5년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財產  
에 대한 算出稅額에 外國人投資比率을 곱한 금액(이하 이 項 및 第 5 項에서  
“減免對象稅額”이라 한다)의 全額을, 그 다음 3년이내에 있어서는 減免對象稅  
額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

2. 綜合土地稅는 事業開始日부터 5년동안은 당해 財產의 課稅標準에 外國人投資  
比率을 곱한 금액(이하 이 項 및 第 5 項에서 “控除對象金額”이라 한다)의 全  
額을, 그 다음 3년동안은 控除對象金額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課稅  
標準에서 공제

⑤外國人投資企業이 事業開始日전에 第 1 項 各號의 사업에 사용할 目的으로 취  
득·보유하는 財產이 있는 경우에는 第 4 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財產에 대  
한 取得稅·登録稅·財產稅 및 綜合土地稅에 대하여 다음 각號와 같이 그 稅額  
을 減免하거나 일정금액을  
稅法 第 9 條의 規定에 의한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減免比率 또는 控除比率을 높인 때  
에는 第 2 號 및 第 3 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 第 8 項의 規定에 의하여 租稅減免決定를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財產에 대  
한 取得稅 및 登錄稅의 減免對象稅額의 全額을 減免

2. 財產稅는 당해 財產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減免對象稅額의 全額을, 그  
다음 3년동안은 減免對象稅額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

3. 綜合土地稅는 당해 財產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控除對象金額의 全額을,  
그 다음 3년동안은 控除對象金額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課稅標準에  
기 공제

### 第121條의5 (租稅의 追徵)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21條의2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減免된 取得稅·登錄稅·財產稅 및 綜合土地稅를 追徵한다. 이 경우 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比率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稅額을 追徵한다.

1. 第121條의2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租稅가 減免된 후 外國投資家의 株式등의 比率이 減免당시의 株式등의 比率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第121條의2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租稅가 減免된 후 外國投資家가 이 法에 의하여 所有하는 株式등을 大韓民國國民 또는 大韓民國法人에게 讓渡하는 경우
3. 外國人投資促進法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抹消된 경우
4. 당해 外國人投資企業이 廢業하는 경우

## [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

**第2條 (禮遇의 基本理念)** 大韓民國의 오늘은 是國民의 愛國精神을 바탕으로 戰歿軍警 및 戰傷軍警을 道遇한 國家有功者의 공헌과 희생의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들에게 숭고한 愛國精神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繼承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國家有功者와 그 遺族의 荣譽及生活이 유지·보장되도록 實質的인 報償이 이루어져야 한다. <改正 94. 12. 31>

**第4條 (適用對象 國家有功者)** ①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國家有功者와 그 遺族 등(다른 法律에서 이 法에 規定된 禮遇등을 받도록 規定된 者를 포함한다)은 이 法에 의한 禮遇를 받는다. <改正 88. 12. 31, 91. 12. 27, 93. 12. 31, 94. 12. 31, 99. 8. 31>

## [ 장애인복지법 ]

**第3條 (基本理念)** 障碍人福祉의 基本理念은 障碍人の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社會統合을 이루는데 있다.

**第9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의 발생을 예방하고, 障碍의 조기발견에 대한 國民의 관심을 높이고 지원하여 필요한 福祉를 증진할 責任을 진다.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女性障礙人の 權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福祉施策을 障碍人 및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國民이 障碍人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14條 (法制상의 措置等)**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이 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法制上 및 財政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